

#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Think Tank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함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
- 관계법령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  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출연금 교부)

나. 주요사업

-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,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
-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, 컨설팅 및 통계 구축
-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·보급
- 시립병원,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

- 생애주기별,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
- 국내·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·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
- 시립병원, 보건소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
-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공공보건의료기관 질 향상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
-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·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
-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의 공공보건 의료정책 수립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단 운영 경비 출연 필요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」 출연금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사업팀 김문희(☎ 2133-7514)